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행정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김부겸 (법제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입법영향분석 수행 기관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법영향분석에 필요한 조사·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입법영향분석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확대하고, 법제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에게 입법영향분석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

행정법 체계를 국민이 보다 알기 쉽게 간결화하기 위하여 인허가의제 관련 협의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위임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3. 00. ~ 5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협의·조정을 위한 회의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된인허가 행정청이 관련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.

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필요한 납부기한의 연기 기간, 분할 납부의 횟수·간격 등 세부 사항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한국법제연구원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”을 “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입법영향분석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,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(중전의 제5항) 중 “제4항”을 “제6항”으로 한다.

- ③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할

현행 법령에 대한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.

④ 법제처장은 입법영향분석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인허가의제 관련 협의·조정) (생략)	제4조(인허가의제 관련 협의·조정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제1항에 따른 협의·조정을 위한 회의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된인허가 행정청이 관련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.
제7조(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) ① ~ ③ (생략)	제7조(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필요한 납부기한의 연기 기간, 분할 납부의 횟수·간격 등 세부 사항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.
제17조(입법영향분석의 실시) ① · ② (생략)	제17조(입법영향분석의 실시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할 현행 법령에 대한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.
<u><신 설></u>	④ 법제처장은 입법영향분석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관계 중

③・④ (생략) ④ 법제처장은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별표에 따른 한국법제연구원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·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⑤ 법제처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·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에 그 조사·연구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	<u>양행정기관의 장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</u> ⑤・⑥ (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) ⑥ ----- ----- ----- <u>정</u> <u>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입법영</u> <u>향분석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</u> <u>로 하여금 제1항, 제2항 및 제5</u> <u>항에 따른</u> ----- ----. ⑦ ----- <u>제6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	
연 락 처	(044) 200 - 6741